대 한 민 국 국 회

수신자 양형위원회

참 조

제 목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개선 건의

1. 양형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개선 건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귀 위원회에서 24일 아동·장애인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재설정관련 임시회의 개최시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 회 여 성 가 족 위 원 장 최 영 희

담당자 신수진 비서관 이메일 suejin @ na.go.kr

시행 행정2011-10-20-01 (2011.10.20.) 접수 ( )

우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본청 548호 / http://www.choi1388.or.kr

전화 02-788-2150 전송 02-788-3640 / / 공개

<붙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개선 건의

안녕하십니까,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입니다.

영화 '도가니'의 개봉으로 재조명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아동·장애인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다시 설정하기 위해 24일 양형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기수 양형위원장님께서 지난 5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는 성범죄관련 공청회와 대국민 설문조사도 실시해 국민의 법감정에 합치되는 양형기준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건의드릴 것이 있어 이렇게 서한을 보냅니다.

■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에 대한 '감경인자'를 개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양형기준에서는 13세 이상 성범죄 뿐 아니라 13세 미만 성범죄에서도 '자수', '처벌불원',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없음' 등이 감경요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러한 감경인자들은 죄질이 나쁜 성범죄자에게까지 면죄부를 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판결을 예로 들면,

o 자신의 딸과 친구인 이웃에 사는 지능이 떨어지는 10세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혼자 하교하는 경우 등 3년여 동안 피해자를 야산으로 데려가 위력으로 12회 추행하고 4회 강간했음에도 불구하고,

-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한다는 점 등이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o 또한 피고인을 포함한 4명이 사전모의 하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15세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게 한 후 의식을 잃게 하여 집단 강간하였고, 사진촬영까지 한 사안에서도

-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합의했다는 것이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o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사과 한 마디 없던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했으나 3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 그러나, 항소심 선고가 있기 바로 전날 오후 피해자에 사전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내버린 공탁금을 이유로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특별히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없음', '상당금액 공탁'을 감경요소에서 삭제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아울러, '집행유예의 기준'에 대한 '일반참작사유'도 개선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현재 일반참작사유로 되어있는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금액 공탁', '자수'와 진지한 반성'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사유로 삭제여부를 고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3세 이상 대상으로 한 경우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집행유예의 참작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양형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현재 강간·강제추행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연령을 '13세 미만'과 '13세 이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개선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현행「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해 특별히 가중처벌하고 있기도 하지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대상 성범죄와 관련하여 '항거불능'을 지금의 판례보다는 좀 더 폭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2007년도 대법원 판례 이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항거불능' 요건은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가 다시 고통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입법과제이기도 합니다만,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라도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님께서도 "사법부가 국민의 감정과 눈높이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질책하는 뼈아픈 지적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도 제자리를 찾아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법감정에 충실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에 반영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10. 20.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